C - 76 - 2013

5.1 일반안전사항

- (1)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(매설물, 가공물, 도로구조물, 지반, 노면교통 등)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가) 흙막이공사를 위한 상세한 위치, 사용기계 및 공정, 매설물 처리방법 등
- (나) 토질조건, 흙막이구조, 지하매설물의 유무, 강널말뚝의 시공순서와 시공시간 간격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한 본 구조물의 시공법, 인접구조물 등과의 관련 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 조물 시공계획
- (다) 강널말뚝의 재질, 배치, 치수, 설치시기, 시공순서, 시공방법, 장비계획, 매설물 철거 및 보호공 계획, 임시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
- (라)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자 가 작성한 수정도면, 계산서, 검토서,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승인한 설계도면
- (마) 흙막이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,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 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
- (바)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(3) 흙막이 작업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.
- (4)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변화, 지하수 유출, 지반의 이완 및 침하, 각종 부재의 변형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,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,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 하여야 한다.
- (5) 해상 또는 하상에 강널말뚝을 시공 시 해일이나 폭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